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5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8.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 의원)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

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 1개 시군구 관할원칙 명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자치구마다 설치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함으로써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같이 시·군·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특성과 교육수요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써 통합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 대응은 물론, 지방교육자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시·군·자치구마다 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법률로써 일률적인 설치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지역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임.

(2)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등을 조례로 위임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공감할 수 있음.

(3) 교육지원청 설치등 의견수렴 절차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결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은 지방

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호 의원, 김용태 의원, 추미애 의원, 민형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준석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